

「민사·행정 소송 등 수행」 세부사업 통계목 간 예산 전용 보고

《 법률지원담당관 》

□ 관련근거

- 지방재정법 제49조(예산의 전용) 및 시행령 제55조(예산의 전용)

□ 전용사유

- 직무관련사건*으로 지정된 손해배상 청구 관련, 피고 재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송달받아 공탁금 납부 필요
 - *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민·형사상 당사자가 된 사건
- 공공운영비(201-02) 내 공탁금 편성 내역 50,000천원 중 예산 잔액이 42,245천원으로 공탁금 부족분(77,755천원) 확보를 위해 예산 전용

□ 세부내용

- 전용 금액 : 77,755천원 ※ 공탁금 납부 필요액(120,000천원) - 잔액(42,245천원)
- 전용 방법 : 동일 세부사업(민사·행정소송등 수행) 내 통계목 간 전용
- (증) 배상금 등 (305-01) ⇒ (감) 공공운영비 (201-02)

□ 추진경과

- 공탁금 납부 완료 : '22. 6.

붙임1**「민사·행정 소송 등 수행」 예산 전용 내역****□ 예산 전용 내역**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		예산액	전용 요구액		전용 후 예산액
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통계목		증	감	
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	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	민사· 행정소송 등 수행	공공운영비 (201-02)	66,800	77,755	-	144,555
			배상금 등 (305-01)	1,500,000	-	77,755	1,422,245

※ 공공운영비 당초 예산(66,800천원)은 공탁금(50,000천원)과 법률자문관리시스템
운영비(16,800천원)의 합계임